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118
----------	-------

발의연월일 : 2026. 9. 4.

발 의 자 : 김선교 · 김상훈 · 서천호
김석기 · 김재섭 · 엄태영
정동만 · 김은혜 · 송언석
이인선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항만구역 내 방파제 · 호안 등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의 출입을 관리청이 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출입통제 조치만으로는 추락 · 낙상 등 사고 발생 위험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안전난간 등 안전시설을 설치 ·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출입통제 지역에 무단으로 출입하는 행위는 안전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에도 이에 대한 과태료 상한이 100만원에 그쳐 제재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관리청이 출입을 통제한 장소에 안전시설을 설치 · 관리하도록 하고, 출입통제 지역 무단출입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200만원으로 상향하여 항만구역의 안전한 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5항 신설 등).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방법 등에”를 “방법, 안전시설의 종류 및 설치·관리 등에”로 한다.

- ⑤ 관리청은 제2항에 따라 출입통제하는 장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시설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제113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제1항 및 제2항에”를 “제1항에”로 한다.

- 1의2. 제28조제2항에 따른 출입통제 지역을 출입한 사람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8조(금지행위 등) ① ~ ④ (생략) <u><신설></u>	제28조(금지행위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u>⑤ 관리청은 제2항에 따라 출입통제하는 장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시설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u>
<u>⑤ 출입통제의 공고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u>	<u>⑥ -----방법, 안전시설의 종류 및 설치·관리 등에-----</u> -----.
제11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략) <u><신설></u>	제113조(과태료) ① ----- ----- ----- -----.
2. ~ 16. (생략) <u>② 제28조제2항에 따른 출입통제 지역을 출입한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u>	1. (현행과 같음) <u>1의2. 제28조제2항에 따른 출입통제 지역을 출입한 사람</u>
<u>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u>	<u>③ 제1항에-----</u>
	2. ~ 16. (현행과 같음) <u><삭제></u>

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 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 다. 다만, 제1항제7호·제8호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부 과·징수한다.	----- ----- -----. ----- -----.
--	---